

코로나 19 경제 대응책



이 자료는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의 지적 자산이므로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의 허가 없이 무단 복사나 배포를 금지합니다.
This material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Unauthorized copying or distribution without permission is prohibited.

비즈니스 지원방안



상세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1. 정리해고 예방 및 재고용 지원방안

-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EWS)
- 임시 10% 급여 보조금
- Work-Sharing 프로그램 연장안
- 캐나다 썸머잡 임시 변경안

2. 신용대출

- 캐나다 긴급 비즈니스 계정 (CEBA)
- 비즈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 구축

1. 정리해고 예방 및 재고용 지원방안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EWS) - 1

-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을 지원하고 캐네디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리해고를 예방하고 이미 해고 했던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사업체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직원의 급여의 75% (주당 최대 \$847)까지 지원함
- 고용주는 2020년 3월에는 최소 15%, 4월과 5월에는 최소 30%의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함
- 고용주는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수입 대비 2020년 3월의 수입을 비교하거나 또는 전년도 동월(2019년 3월)의 수입과 2020년 3월을 비교하여 최소 15%의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함 (두 가지 방법중 택일)
- 2020년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12주간이 적용됨
-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 보조금은 제한이 없음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금 (CEWS) - 2



- 고용주는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임금의 최초 75%를 보조받거나 또는 기존의 직원 급여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 CEWS와의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고려하고 있음
- 고용주가 CEWS의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상환해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CEWS를 수령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처벌에는 벌금이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음
- CEWS의 신청방법은 CRA의 사업체 계정에서 직접 신청함
Canada Revenue Agency's My Business Account portal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wage-subsidy.html>

임시 10% 급여 보조금

- 3개월간 고용주가 국세청 (CRA)으로 송금하는 급여 공제 금액을 줄이는 조치임
- 2020년 3월 18일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기존 사업자 번호와 급여산정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직원에게 급여, 상여금 및 기타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적용 기간;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 직원당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최대 \$1,375 까지 감소 시킬 수 있음 / 고용주당 최대 \$25,000
- 보조금은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 또는 고용주가 직접 계산함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음)
-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보조금을 계산한 뒤, 국세청에 보내는 연방세 및 주 소득세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감소시켜 송금함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ovid-19-update/frequently-asked-questions-wage-subsidy-small-businesses.html>

Work-Sharing 프로그램 연장



- Work-Sharing 프로그램의 최대 기간을 38주에서 76주로 연장함
- Work-Sharing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최소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기존 30일)
- 신청서: Work-Sharing Agreement form (EMP5100)
- 첨부문서 A: Work-Sharing Unit form (EMP5101)
- **이메일 발송(Ontario):** ESDC.ON.WS-TP.ON.EDSC@servicecanada.gc.ca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corporate/notices/coronavirus.html#h4.04>

캐나다 썸머잡 임시 변경안



- 정부는 썸머잡에 소요되는 급여 보조금을 확충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고용주에게 시간당 최저 임금의 100%까지 지원함
- 썸머잡의 고용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으며
- 업무 및 활동의 조정을 인정하였고
-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을 기본으로 함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funding/canada-summer-jobs.html>

2. 신용대출

캐나다 긴급 비즈니스 계정 (CEBA)



- 소규모 자영업 및 비영리 단체에 최대 \$40,000까지의 무이자 대출
-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비용 충당을 지원함 (급여, 렌트비,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및 채무 등의 운영비 지출 가능)
- 사업주는 2019년도에 최소 **2만불**에서 **백오십만불** 사이의 인건비 지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금액을 상환할 경우, 대출금의 25% (최대 \$10,000)가 상환 면제 됨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잔여 대출액은 5% 이자율이 적용되어 3년 거치로 상환하게 됨
- 사업주의 주거래 은행에서 현재 신청가능함

감사합니다.!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Call us at 416-340-1234 or
Email to kcwa@kcwa.net